

구 분	계	신규위임	사무삭제	근거조문 등 변경
자동차관리법	16		14	2
하 천 법	32	11	3	18

다.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95조

※ 제95조(사무의 위임 등) ①(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무소, 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④ (생략)

□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김동수)

□ 본 개정조례안은 하천법의 전문개정('99. 8. 9), 공중위생관리법의 제정('99. 8. 9), 자동차관리법의 개정('99. 4. 15)에 따라 신설된 사무중 주민편의와 능률행정구현 측면에서 자치구에 위임함이 합리적인 사무를 신규로 위임하고, 폐지되거나 자치구 고유사무로 변경된 내용을 삭제하여 현행 법령의 제·개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서

○ 공중위생법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무의 근거법령을 수정하고 면허취소사무를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고려하여 신규로 자치구에 위임하고자 함이며,

○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폐지되거나 자치구 고유사무로 이양된 사무를 삭제하며, 시와 자치구의 공동사무로 된 자동차관리사업의 보고명령 및 검사와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등에 관한 사무의 한계를 정하며,

○ 하천법의 전문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무명과 위임근거를 변경하고 하천대장의 열람사무 등 11개 사무를 자치구에서 처리함이 민원편익증진에 효율적인 사무를 신규로 위임하고 자치구 고유사무가 된 하천수익자부담금 부과·징수 납부 등 3개 사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13명, 출석위원 8명 전원일치)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622
----------	-----

2000. 7. .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시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0년 6월 15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1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2000년 6월 28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기획예산실장 김우석)

가. 제안이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하는 강남자원회수시설 및 강남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시설
  - 시설명 : 강남자원회수시설·강남주민편익시설
  - 위치 : 강남구 일원동 4-5번지 일대
  - 규모
    - 자원회수시설 : 1일 900톤 쓰레기 소각·처리
    - 주민편익시설
      - 면적 : 6,511㎡
      - 용도 :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탁구장, 강당 등
  - 개원시기 : 주민들과 협의 완료후 개원에 정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5조

제95조(사무의 위임 등) ① ~ ② (생략)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의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생략)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김동수)
  -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총 공사비 1,010억원을 투입하여 '97년 3월 28일 착공, 2000년 12월 준공예정인 강남자원회수시설과 주민편의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13명, 출석위원 8명 전원일치)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626
------	-----

2000. 7. .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0년 6월 15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1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2000년 6월 29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 : 산업경제국장 임재오)
  - 가. 제안이유
    - 현행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시설과 동·남대문 패션상권 지원육성을 위해 신설하고자 하는 서울패션디자인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지원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지원시설의 명칭·위치 및 기능을 정함.

명칭	위치	기능
서울산업지원센터	강서구 등촌동 647-26	중소기업종합지원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강서구 등촌동 647-26	중소기업창업보육
잠실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송파구 잠실 1동 10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창동중소기업제품전시장	도봉구 창동 1-10	중소기업제품전시홍보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중구 예장동 8-145 외 1	애니메이션산업 육성지원
서울패션디자인센터	중구 을지로5가 40-3	패션산업 육성지원

- 중소기업지원시설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 확대 및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 능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방법 등은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5조)
- 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는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도록 함.(안 제6조)

※사용료 :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

- 다. 참고사항
  - 관계법규
    - 중소기업기본법
      - 제3조(정부등의 책무) ① (생략)
      -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참작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